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
- 지방행정혁신, 사업별 예산 등 한시인력을 신규행정수요 분야 인력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개정조례 임

3. 주요내용

- 법령 인용조항 변경(안 제1조)
- 한시정원 관련조항 삭제(안 제5조 및 별표2)
- 한시정원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재배치
 -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 : 변동 없음
 - 한시정원 : △7명(6급 1명, 7급4명, 8급 2명)
 - 경제살리기분야 증원 : +7명(6급 1명, 7급4명, 8급 2명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(행정안전부 '08.5.1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 분야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
- 지방행정혁신, 사업별예산, 과거사 정리 등 한시인력을 재배치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한시정원 관련조항인 안 제5조 및 별표2를 삭제
-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변동 없이 「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7명」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임
- 한시정원 직급별 인원 : 7명(6급1, 7급4, 8급2)

○ 검토결과

- 한시정원 7명을 신규행정 수요분야 인력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